

12.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중개정

건설교통부공고제1999-222호 1999. 7. 2.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별법 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시점 이전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전체토지의 가액에 지상물의 평가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가액의 단계에 따라 다음의 요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으로 산정하고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제한이 없는 상태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지가의 총액이 평가가액의 50%

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평가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의 가액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물건조사비

물건조사비는 건물의 경우 1동당 3천원으로 하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보상평가의 경우에는 1필지당 1만5천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평가업자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의뢰자와 합의하여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1.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상담 및 자문 : 1건당 3만원

2. 서면에 의한 상담 및 자문 : 1건당 10만원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

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9. 어장 및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의 평가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하부분토지사용료 : 당해 토지의 지

표면의 평가가액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